2025. 7. 19. 시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개편 안내

법원행정처

2025. 7. 19.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입양재판 절차 전반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양자가 될 아동 결정 및 보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결연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제도 신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법

- 보건복지부가 국제입양에서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당국 간 협의 진행, 입양 이후의 아동의 적응 확인
- 아동의 출신국 또는 입양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 세분

입양재판 절차

	구분	대상	재판의 종류
국내입양특별법 (국내→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허가재판
국제입양법	외국으로의 입양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계자	입양허가재판
국제입양법	국내로의 입양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① **친양자입양 전환재판** ② **국제입양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③ **국제입양법 제23조**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① **친양자입양 전환재판**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협약') 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등에 의해 입양이 성립하였으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

② **국제입양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 협약 비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한 경우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양허가재판

③ **국제입양법 제23조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되지 않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양허가재판

입양재판에서
아동의 이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허가 및 친양자입양 전환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아동의 연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집니다.

◑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상황이나 환경 등에 관한 조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국내→국내)

◑ 국내입양특별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국내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

1 입양허가심판 청구

◑ 청구권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관할법원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 청구 시 첨부서류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2. 사건본인을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사건본인)
6.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들)
7.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재판부는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예: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해당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의 심리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에 대한 양자의 의사표시, 양부모가 될 자격, 친생부모의 동의 등 입양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3 재판부의 임시양육결정,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 임시양육결정이란?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재판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 입양허가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양육결정 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재판부는 임시양육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이란?

- 재판부는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 · 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사유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입양허가심판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시 아동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외국으로의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보호대상아동, 계자*가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자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 외국으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계자의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입양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입양허가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1 입양허가심판 청구

◑ 청구권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관할법원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 청구 시 첨부서류

1. 국제입양절차진행협의서 (양자가 될 아동이 계자인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사건본인)
3.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혼인 및 가족관계,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들)
5.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7. 건강진단서, 심리검사결과서, 약물·알코올 중독검사결과서(청구인들)
8.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9.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10. 입양교육이수 증명서
11. 청구인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12. 입양 동의 및 승낙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사건본인, 법정대리인)

재판부는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예: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해당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 유의사항

계자의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은 입양허가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희망하는 입양의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의 심리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에 대한 양자의 의사표시, 양부모가 될 자격, 친생부모의 동의 등 입양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3 입양허가심판

◑ 보호대상아동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시 아동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계자(배우자의 친생자)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시 아동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친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국내로의 입양)

국내로의 입양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내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친양자입양 전환재판

협약 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하였으나 그 입양이 기존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종료시키는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입니다.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 관계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입양허가 여부는 이 재판의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1 전환심판 청구

◑ 청구권자

양부모

◑ 관할법원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 청구 시 첨부서류

1.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혼인 및 가족관계,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들)
3.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서류
4.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5. 사건본인과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판부의 심리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족관계 종료에 대한 이해 및 동의 등 친양자입양 전환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3 친양자입양 전환심판

전환심판 확정 시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입양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협약 비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한 경우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양허가 재판입니다.

[참고] 협약 비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217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입양허가심판 청구

◑ 청구권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관할법원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 청구 시 첨부서류

1.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건본인)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혼인 및 가족관계,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들)
4.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5.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6. 건강진단서, 심리검사결과서, 약물·알코올 중독검사결과서(청구인들)
7.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8.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9. 입양교육이수 증명서
10. 입양 동의 및 승낙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사건본인, 법정대리인)

재판부는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예: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해당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 유의사항

재판에 따라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허가와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입양허가가 모두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입양허가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희망하는 입양의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의 심리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에 대한 양자의 의사표시, 양부모가 될 자격, 친생부모의 동의 등 입양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3 입양허가심판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시 아동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친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제입양법 제23조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되지 않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양허가 재판입니다.

◑ 아동의 출신국이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면 국제입양법 제23조에 따른 입양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양허가재판 절차 및 심리는, 국제입양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절차 및 심리 규정이 준용됩니다.

입양재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족'이라는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법원행정처